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노13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항 소 인 쌍방

검 사 오승식, 박철량(기소), 김현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현원
담당변호사 이정원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6. 4. 14. 선고 2025고단4225, 2026고단394(병
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6. 7. 24.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배척)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준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7

판사 정소영 _____

판사 김승섭 _____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4225, 2026고단39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오승식, 박철량(기소), 정한균, 박우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헌원

담당변호사 이정원, 태영호

판 결 선 고 2026.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6 내지 24호(대구지방검찰청 25년압제2227호), 압수된
증 제1호(대구지방검찰청 2026압제50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2025고단4225』

1.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2025. 9. 7. 00:39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 철제 구조물에 필로폰 약 1g을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감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g을 관리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5.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5. 9. 7. 20:40경 서울 강서구 C 불상 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3g을 오렌지주스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5.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5. 9. 21. 21: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상가 공용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음료수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5. 9. 18. 21:00경 또는 같은 달 19. 21:0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사당역 인근 상가 공중화장실 내에서 액상대마 약 0.03ml를 쿠키호일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0.03ml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5. 9. 25. 14:42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F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오토바이 보관함 내 가방에 필로폰 약 0.25g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5g을 소지하였다.

『2026고단394』

1. 피고인은 2025. 9. 18. 00:3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빌라 외벽 가스배관함 안에 필로폰 약 2.41g(비닐 팩 무게 포함)을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감아 은닉하여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2. 피고인은 2025. 9. 18. 16:22경 서울 서초구 H, 3층 양수기함 안 좌측 상단에 필로폰 약 0.6g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감아 은닉하여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4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증 제1, 6 내지 24호(대구지방검찰청 25년압제2227호)의 현존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T'(이하 'J') 마약류 판매 채널 확인, 9. 8. 'J'상대 필로폰 위장거래 - 드랍 좌표 확인, 필로폰 수거 및 수거 증거물 감식의뢰 등,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중량 확인, 압수한 필로폰 추정 물질 간이시약 검사 결과, CCTV - 필로폰 좌표 B아파트 '드라퍼' 수사]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된 후 필로폰 수거한 장소 지목-CD첨부, 증 제24호 필



로폰 계량 - 0.25g, 지퍼백 등 국과수 감정결과-증 제24호 필로폰 양성, 증 제1호 ' 필로폰 1g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

1.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2026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감정서, 감정서(2025-H-27516)

1. 압수된 증 제1호(대구지방검찰청 2026압제506호)의 현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품 증 제1호 실량 측정 : 0.6g, 필로폰 0.5g 위장거래 수사 착수, 압수품 수거 당시, 현장 상황, 피의자 범행 장면 및 서초·관악구 소재 건물 출입 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관리,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6고 단39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대구지방법검찰청 25년압제2227호로 압수된 증 제3호(성분 불상 가루가 미량 들어있는 지퍼백)의 몰수도 구하나, 감정결과¹⁾ 위 증 제3호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아 기소된 범죄사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한편 증 제6 내지 9호(야전삽, 파손된 모종삽, 모종삽)의 경우 피고인이 땅에서 파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된 물건뿐만 아니라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을 포함하므로 이를 각 몰수한다]

1. 추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거래가액 10만 원 × 2회) + 대마 1회 투약분 거래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판

1) 수사보고서(지퍼백 등 국과수 감정결과-증 제24호 필로폰 양성) 참조



때 범행에 운반책(속칭 '드라퍼', Dropper) 역할로 가담해 필로폰을 관리, 소지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유통행위는 마약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마약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마약 판매 범죄의 실현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운반책으로서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범행기간이 아주 길지도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판사 박용근 _____